

학과전환규정

제정 : 2014.03.01

개정 : 2014.11.01

개정 : 2020.03.01

개정 : 2021.02.08

개정 : 2021.12.01

개정 : 2023.10.16

제1조(목적) 학생정원감축에 따른 교원의 재배치를 통해 일부 편중된 교원분포를 개선하고, 재학생에 대한 교육의 질 향상 및 입시, 취업활동 등 전담업무를 부여하고자 한다. <개정 2014.11.01.>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4.11.01.>

1. “학과전환”이란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기존의 소속학과에서 타학과 소속으로의 신분변동을 말한다. <개정 2014.11.01., 2021.12.01.>
2. 대상학과는 편제완성정원을 기준으로 전임교원확보율이 60% 이하인 학과를 말한다. <개정 2014.11.01., 2020.03.01., 2021.12.01.>
3. “학과전환자” 학과전환이 확정된 자를 말한다. <개정 2014.11.01.>
4. “전공전환이행기간” 학과전환자가 학과전환을 위해 필수적요건을 갖추기 위한 기간을 말한다. <개정 2014.11.01.>

제3조(학과전환신청 자격요건) 학과전환신청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하나 1를 충족해야 한다. <개정 2014.11.01., 2021.12.01.>

1. 소속학과가 폐지(폐과)된 전임교원 <개정 2014.11.01.>
2. 과원학과에 소속된 전임교원 <개정 2014.11.01.>
3. 대상학과 관련 전공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교원 <개정 2014.11.01.>

제4조(필요적 학과 전환교원) ① 학과전환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전환학과를 결정한다. <개정 2014.11.01., 2021.02.08., 2021.12.01.>

- ② 구조조정위원회 직권으로 소속학과를 전환한 교원은 「학과구조조정에 관한 규정」 제11조제3항을 적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1.01., 2021.02.08., 2021.12.01.>

제5조(학과전환 절차) 학과전환 시기 등 절차는 필요에 따라 주무부서에서 계획을 수립

하여 시행한다. <개정 2014.11.01., 2021.12.01.>

- ① <삭제 2014.11.01.>
- ② <삭제 2014.11.01.>
 - 1. <삭제 2014.11.01.>
 - 2. <삭제 2014.11.01.>
 - 가. <삭제 2014.11.01.>
 - 나. <삭제 2014.11.01.>
 - 3. <삭제 2014.11.01.>
- ③ <삭제 2014.11.01.>
- ④ <삭제 2014.11.01.>

제6조(학과전환자 확정) ① 구조조정위원회는 학과전환신청서를 접수받아 학과전환심사표에 의한 평가를 거쳐 총점 60점 이상인 자 중 학과전환 대상후보를 선정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. <개정 2014.11.01., 2021.12.01.>

- ② 총장은 구조조정위원회에서 선정보고한 학과 전환대상자 중 학과전환자를 확정하여 해당자에게 통보한다. <개정 2014.11.01.>
- ③ <삭제 2014.11.01.>
- ④ <삭제 2014.11.01.>

제7조(학과전환심사) ① 학과전환심사는 학과전환심사표(별지 제3호 서식)에 의한다. <개정 2014.11.01.>

- ② 학과전환심사표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하며,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. <개정 2014.11.01., 2021.12.01.>
 - 1. 기본평가 : 4개 항목 10점 만점으로 한다. <신설 2014.11.01.> <개정 2021.12.01.>
 - 2. 수행평가 : 6개 항목 40점 만점으로 한다. <신설 2014.11.01.> <개정 2021.12.01.>
 - 3. 교원업적평가 : 교원업적평가 점수(100점)을 적용하며, 5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. <신설 2014.11.01.> <개정 2021.12.01.>
- ③ <삭제 2014.11.01.>

제8조(학과전환자 처리) ① 학과전환자는 전환이 결정된 다음 학기부터 2년까지는 책임시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. <개정 2014.11.01., 2021.02.08., 2021.12.01.>

- ② 학과전환자는 학과전환기간 중 본인이 희망할 경우 휴직을 할 수 있으며, 휴직기간 중 보수는 별도로 정한다. <개정 2014.11.01.>
- ③ 학과전환자에게 학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, 그 금액은 별도로 정한다. <개정2014.

11.01.>

④ <삭제 2014.11.01.>

⑤ <삭제 2014.11.01.>

⑥ <삭제 2014.11.01.>

제9조(학과전환자의 의무) ① 학과전환자는 학과전환 연봉제 계약 전임교원규정에 따르며 학위취득 이행각서 및 재학증명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고 3년 이내에 관련 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1.01., 2020.03.01., 2023.10.16.>

② 학위 취득이 어려운 경우 2년 이내 전환한 전공 관련학회지에 200%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거나 학교에서 정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1.01., 2020.03.01.>

③ 학과전환자가 기간 내에 학위 취득을 미이행하거나 전공전환을 이유로 휴직하였다가 복직을 하지 아니하거나 면직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한 학비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1.01., 2020.03.01., 2021.12.01.>

④ 학과구조조정 관련 학과전환자는 학과전환 연봉계약 전임교원 운영규정에 따른다. <신설 2020.03.01.>

제10조(전공전환 불이행자 처리) 제9조제1항과 제2항의 조건 미이행시 학과전환을 취소하고 「사립학교법」 제56조제1항에 의거하여 처리한다. <개정 2014.11.01., 2020.03.01., 2021.12.01.>

제11조(학과 전환 제한) 신청마감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은 학과전환을 제한한다.

1. 퇴직 잔여기간이 5년 미만인 자 <개정 2021.12.01.>

2. 1회 이상 학과전환을 실시한 자. 다만, 학교의 필요에 의해 실시한자는 제외한다. <개정 2020.03.01., 2021.12.01.>

3. 그 밖에 학과전환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

제12조(기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교원업적평가부분의 평가적용에 대하여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며,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학과 전환 신청서					
현 소속 학과명		직명		성명	
최초 임용일		임용 전공분야			
최종학위(취득일)		세부 전공			
최종학위 논문명					
전환희망학과					
학과 전환 요건 (필수평가)	전공분야 관련성	최초 임용 학위(전공분야)의 대상학과 관련성			
		대상학과 관련 학위(석사/박사) 취득			
	전공 강의가능 교과목(3학점/학기)	1학기			
		2학기			
학과전환 신청배경	<input type="checkbox"/> 폐지학과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진폐과 예정 <input type="checkbox"/> 과원 <input type="checkbox"/> 학위취득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				
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, 학과전환 규정 제3조에 의거 학과전환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.					
20					
신청인 : _____ (서명)					
구조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					

※ 첨부 1. 필수평가 증빙서류(전공분야 관련성)

[별지 제2호 서식]

학과 전환 수행평가서					
현 소속 학과 명		직 명		성 명	
전 환 희 망 학 과					
수업진행 계획	강의 가능 교과목에 대한 수업진행 계획 첨부				
학생지도 계획					
취업활동 계획					
입시활동 계획					
산학활동 계획					
학과 및 대학발전 계획					
학과 전환 규정에 의거 수행평가서를 제출합니다. 20 신청인 : (서명)					
구조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					

[별지 제3호 서식]

학과 전환 심사표						
신청자	현 소속 학과		직명		성명	
	전환 신청 학과					
기본평가, 수행평가, 교원업적평가						
구 분	평가항목				요건충족여부 및 점수	
기본평가 (10점)	<input type="checkbox"/> 전환 대상학과 전임교원의 동의 여부			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	
	<input type="checkbox"/> 전공 강의가능 교과목(3학점/학기)				<input type="checkbox"/> 충족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충족	
	<input type="checkbox"/> 최초 임용 학위(전공분야)의 대상학과 관련성				<input type="checkbox"/> 충족	
	<input type="checkbox"/> 대상학과 관련 학위(석사/박사) 취득				<input type="checkbox"/> 충족	
	계 (10점)					
구 분	평가항목		평가의견	평가점수		
수행평가 (40점)	<input type="checkbox"/> 수업진행 계획			7•6•5•4•3•2•1		
	<input type="checkbox"/> 학생지도 계획			7•6•5•4•3•2•1		
	<input type="checkbox"/> 취업활동 계획			7•6•5•4•3•2•1		
	<input type="checkbox"/> 입시활동 계획			7•6•5•4•3•2•1		
	<input type="checkbox"/> 산학활동 계획			7•6•5•4•3•2•1		
	<input type="checkbox"/> 학과 및 대학 발전 계획			5•4•3•2•1		
	계 (40점)					
교원 업적평가 (50점)	교원 개인 평가	<input type="checkbox"/> 교육활동 부문				
		<input type="checkbox"/> 산학협력활동 부문				
		<input type="checkbox"/> 연구활동 부문				
		<input type="checkbox"/> 봉사기타활동 부문				
	<input type="checkbox"/> 가감산점					
계 (50점)						
합계 (100점)					점	
<p>전임교원 학과 전환 신청과 관련하여 기본평가, 수행평가, 교원업적평가에 대해 위와 같이 평가·심의하였음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. . . 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위 원 : (서명)</p> <p>구조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</p>						

